24. 지 방 세 지 출 보 고 서

(24) 지방세 지출보고서(2014년도 실적기준)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4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97,912,031,380
	비과세	41,783,974,560
	감면	156,128,056,820
지방세 징수액(B)		854,664,413,930
비과세·감면율(A/A+B)		18.8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4년(결산)	비중
총 계		**197,912,031,380**	**100.0**
1	일반공공행정	11,537,545,970	5.8
2	공공질서 및 안전	80,931,820	0.0
3	교육	6,986,162,270	3.5
4	문화 및 관광	5,723,400,260	2.9
5	환경보호	223,374,200	0.1
6	사회복지	19,342,110,850	9.8
7	보건	734,447,430	0.4
8	농림해양수산	14,329,879,930	7.2
9	산업·중소기업	30,679,163,230	15.5
10	수송 및 교통	8,465,606,400	4.3
11	국토 및 지역개발	66,099,150,930	33.4
12	과학기술	0	0.0
13	국가	19,370,681,180	9.8
14	외국	0	0.0
15	기타	14,339,576,910	7.2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4년(결산)	비중
총 계			197,912,031,380	100.0
	보통세		193,312,606,190	97.7
		취 득 세	189,555,077,170	95.8
		등 록 면 허 세	3,757,529,020	1.9
		레 저 세		
		지 방 소 비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지 방 소 득 세		
		담 배 소 비 세		
	목적세		4,599,425,190	2.3
		지역자원시설세	4,599,425,190	2.3
		지 방 교 육 세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계	269,127,435,970	197,912,031,380	-71,215,404,59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8,857,085,090	8,723,823,650	-133,261,440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276,790,750	2,439,276,370	1,162,485,62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671,340	2,813,160	141,820
정당에 대한 비과세	390,900	388,260	-2,64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40,722,840	354,654,260	-86,068,580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81,840	871,930	790,09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433,835,890	15,718,340	-418,117,55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7,449,910	80,931,080	73,481,170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710	740	3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875,063,070	605,698,430	-269,364,64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70,980	184,520	13,540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1,696,560	1,291,640	-404,92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859,128,860	3,693,197,360	1,834,068,50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842,740	617,340	-225,40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52,084,200	29,171,580	-1,222,912,620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100,320	0	-100,32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206,573,290	2,656,001,400	2,449,428,11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4,135,763,350	5,385,785,930	1,250,022,580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163,300	298,500	135,200

감 면 유 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3,526,980	7,037,050	-46,489,93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13,152,680	330,278,780	317,126,100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0	53,550	53,550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0	223,320,650	223,320,650
장애인에 대한 감면	2,939,239,830	3,092,076,000	152,836,17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900	2,131,110	2,130,210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3,380,750	3,380,75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338,604,950	293,295,540	-45,309,41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127,240	110,040	-17,20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3,265,219,370	3,155,032,100	-110,187,27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418,512,530	392,050,950	-26,461,580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36,706,360	3,661,010	-33,045,350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448,000	11,800,000	11,352,000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19,986,460	25,825,450	5,838,99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791,126,280	714,344,090	-76,782,19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79,134,261,240	624,366,190	-78,509,895,05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8,438,271,140	10,903,730,620	2,465,459,48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97,483,200	99,602,000	2,118,80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24,581,197,240	20,705,000	-24,560,492,24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860,783,150	665,296,250	-195,486,900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89,427,790	69,151,180	-20,276,61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7,622,510,500	7,846,025,880	223,515,38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355,068,060	1,200,389,340	-154,678,72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232,899,350	1,803,655,280	570,755,930
임업인에 대한 감면	1,360,000	4,079,930	2,719,930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949,720	436,490	-513,230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2,008,152,690	2,100,215,040	92,062,35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790,620,820	900,328,970	109,708,150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0	16,551,350	16,551,35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368,116,670	458,197,650	90,080,980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103,500	80,400	-23,10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672,140,480	9,040,133,270	-1,632,007,210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03,500	100,500	-3,000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50,996,060	129,361,370	78,365,31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3,368,910	119,162,450	55,793,5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7,920,170	185,063,370	137,143,200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71,016,360	3,907,800	-67,108,56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24,057,000	22,500,000	-1,557,00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869,140,400	1,403,960	-867,736,440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5,444,270	36,993,460	1,549,190

감 면 유 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4,607,870	0	-4,607,87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14,505,030	292,069,820	-122,435,210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34,000	7,716,000	7,582,00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9,605,018,000	11,188,530,020	1,583,512,020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885,273,450	1,567,523,820	682,250,37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4,140,769,610	7,492,859,510	3,352,089,900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0	591,757,480	591,757,48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83,225,150	1,334,330,460	1,251,105,310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4,805,050	0	-4,805,05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4,494,198,600	4,568,978,250	74,779,65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1,370,214,400	1,696,824,060	326,609,66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174,170	7,613,530	7,439,36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851,671,490	857,860,100	6,188,61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92,001,940	0	-192,001,94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920,904,140	2,291,588,230	-629,315,910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848,730	26,717,000	25,868,2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0	64,880,720	64,880,72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6,441,284,370	7,289,275,320	847,990,95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4,824,744,310	42,201,980,260	-2,622,764,05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621,778,760	2,381,985,040	760,206,280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2,499,863,440	4,649,003,150	2,149,139,710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3,990,273,760	0	-3,990,273,760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1,401,361,400	7,193,721,210	5,792,359,810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339,000	0	-339,000
국가에 대한 비과세	2,585,283,140	17,098,088,250	14,512,805,110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3,797,923,190	2,106,909,940	-1,691,013,25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1,223,700	165,207,970	93,984,270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0	475,020	475,02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74,680,950	54,900,780	-19,780,170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4,283,175,590	6,014,526,450	1,731,350,86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47,505,900	6,947,850	-440,558,05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357,558,130	1,395,127,720	37,569,59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431,010,320	6,179,231,210	1,748,220,89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296,167,520	367,969,290	71,801,770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266,930	542,120	275,19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888,620	1,788,000	899,38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389,910,060	317,686,880	-72,223,18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310,360	0	-310,36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875,150	856,610	-18,54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1,537,545,97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8,723,823,650**
		취 득 세	7,514,551,430
		등록면허세	33,423,410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175,848,810
		-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2,439,276,370**
		취 득 세	2,439,276,370
		-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813,16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2,813,160
		-	
4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5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 §89②, §89③)	**소 계**	**388,2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388,260
		-	
6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7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354,654,260**
		취 득 세	297,135,270
		등록면허세	1,123,5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56,395,490
		-	
8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소 계**	**871,930**
		등록면허세	866,62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5,310
		-	
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소 계**	**15,718,340**
		취 득 세	876,240
		등록면허세	14,842,100
		재 산 세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80,931,820**
1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1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 계**	**80,931,080**
		취 득 세	77,709,730
		등록면허세	27,000
		레 저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3,194,350
		-	
13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소 계**	**74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740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교 육		**합 계**	**6,986,162,270**
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605,698,430**
		취 득 세	172,874,330
		등록면허세	3,208,5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429,615,600
		-	
15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84,52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184,520
		-	
17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1,291,640**
		지역자원시설세	1,291,64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1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소 계**	**3,693,197,360**
		취 득 세	3,118,350,740
		등록면허세	3,624,0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571,222,620
		-	
1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 계**	**617,340**
		지역자원시설세	617,340
		-	
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29,171,5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135,0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29,036,580
		-	
21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3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 계**	**2,656,001,400**
		취 득 세	2,611,721,56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44,279,840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5,723,400,260**
2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5,385,785,930**
		취 득 세	4,855,059,590
		등록면허세	2,870,0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27,856,340
		-	
24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298,500**
		지역자원시설세	298,500
		-	
25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주 민 세	
		-	
2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 계**	**7,037,05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7,037,050
		-	
27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4②) -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2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 계**	**330,278,780**
		취 득 세	330,278,780
		재 산 세	
		레 저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223,374,200**
30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① 1·2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53,550** 53,550
3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재산세 75%, 교육훈련등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감면, 해양오염방제설비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9 1·2·3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재산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② 1호,2호, §47⑥)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③)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④)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3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223,320,650** 223,320,65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19,342,110,850**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 계**	
		주 민 세	
		-	
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3,092,076,000**
		취 득 세	3,092,076,000
		자동차세	
		-	
3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8)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 계**	**2,131,110**
		취 득 세	2,092,76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38,350
		-	
38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및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소 계**	**3,380,750**
		취 득 세	3,380,750
		재 산 세	
		-	
39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소 계**	**293,295,540**
		취 득 세	227,291,910
		등록면허세	2,093,0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63,910,630
		-	
4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④)	**소 계**	**110,040**
		지역자원시설세	110,04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3,155,032,100**
		취 득 세	3,053,526,660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101,505,440
		-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소 계**	**392,050,950**
		취 득 세	387,694,95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4,356,000
		-	
4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3)	**소 계**	**3,661,010**
		취 득 세	1,932,87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1,728,140
		-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1·3호)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2호)	**소 계**	**11,800,000**
		취 득 세	11,800,000
		재 산 세	
		-	
4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세 면제 및 재산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②)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4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4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소 계**	**25,825,450**
		취 득 세	22,847,450
		등록면허세	2,978,000
		재 산 세	
		-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7호)	**소 계**	**714,344,090**
		취 득 세	708,542,510
		등록면허세	3,766,300
		주 민 세	
		재 산 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2,035,280
		-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5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 - 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624,366,190**
		취 득 세	624,366,19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60/100*1/10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소 계**	**10,903,730,620**
		취 득 세	10,437,290,85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466,439,770
		-	
5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99,602,000**
		등록면허세	99,602,000
		재 산 세	
		-	
5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36의2①)	**소 계**	**20,705,000**
		취 득 세	20,705,00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보건		합 계	734,447,430
5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7, §41①) -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조례)	소 계	665,296,250
		취 득 세	665,242,250
		등록면허세	54,000
		주 민 세	
		재 산 세	
		-	
56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소 계	69,151,180
		취 득 세	69,151,180
		재 산 세	
		-	
5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0)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4,329,879,930**
58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7,846,025,880**
		취 득 세	7,827,086,380
		등록면허세	18,939,500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	
59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1,200,389,340**
		취 득 세	1,145,436,910
		등록면허세	54,952,430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1,803,655,280**
		취 득 세	1,685,914,140
		등록면허세	117,741,140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62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 임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	**소 계**	**4,079,930**
		취 득 세	4,079,930
		주 민 세	
		자동차세	
		-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재 산 세	
		-	
6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⑤)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차량 취득세 면제 (조례) - 직접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조례) - 지원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5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수산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436,490**
		취 득 세	113,830
		등록면허세	312,500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10,160
		-	
66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67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75%)(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2,100,215,040**
		등록면허세	2,100,215,04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1호)	**소 계**	**900,328,970**
		취 득 세	897,560,170
		등록면허세	2,768,800
		주 민 세	
		재 산 세	
		-	
69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100%)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등록면허세	
		-	
70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16,551,350**
		취 득 세	16,551,350
		재 산 세	
		-	
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458,197,650**
		취 득 세	458,197,650
		재 산 세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0,679,163,230**
7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①·②) -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소 계**	**80,4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80,400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4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소 계**	**9,040,133,270**
		취 득 세	8,919,368,010
		등록면허세	120,765,260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74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감면(50%),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소 계**	**100,5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100,500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75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129,361,370**
		취 득 세	129,361,370
		재 산 세	
		-	
76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소 계**	**119,162,450**
		취 득 세	119,162,450
		주 민 세	
		재 산 세	
		-	
7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185,063,370**
		취 득 세	185,063,370
		재 산 세	
		담배소비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7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행자·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 합병에 대한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4)	**소 계**	**3,907,8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3,907,800
		재 산 세	
		-	
7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년간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년간 재산세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소 계**	**22,500,000**
		취 득 세	22,500,00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1,403,960**
		취 득 세	1,403,960
		재 산 세	
		-	
81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수출용,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1·3호)	**소 계**	
		담배소비세	
		-	
8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80, 조례)	**소 계**	**36,993,460**
		취 득 세	34,928,260
		등록면허세	2,065,200
		재 산 세	
		-	
8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84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에 대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 및 50% 감면(조특법 §119⑤, '10.1.1.폐지) -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조례)	**소 계**	**292,069,820**
		취 득 세	292,069,82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7,716,0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7,716,000
		재 산 세	
		-	
8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 계**	**11,188,530,020**
		취 득 세	11,188,530,020
		자동차세	
		-	
8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4호)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5· 16·17·19·23·24·25·26·27·29, §120①5·11·15·16·19·20·21·22·23·25,§120⑥2·4·9·10·12·13), 50% 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	**소 계**	**1,567,523,820**
		취 득 세	571,732,360
		등록면허세	995,791,460
		-	
88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⑥7·8)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립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②)	**소 계**	**7,492,859,510**
		취 득 세	7,492,398,710
		등록면허세	460,800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분리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③)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		
89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조특법 §119③, §120④) -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증자 등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조특법 §119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591,757,480** 591,757,480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8,465,606,400**
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1,334,330,460** 1,334,330,460
91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9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9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5)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9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소 계	4,568,978,250
		취 득 세	4,568,978,250
		-	
95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50%)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	소 계	1,696,824,060
		취 득 세	1,696,824,060
		재 산 세	
		-	
96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노후자동차를 폐차·양도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70% 감면(삭제2010.12.27)	소 계	
		취 득 세	
		-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자동차세	
		-	
9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9) - 주차장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삭제)	소 계	7,613,530
		취 득 세	7,613,530
		-	
9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삭제)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50%) 및 등록면허세 감면(75%)(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0②)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857,860,100
		취 득 세	851,302,870
		등록면허세	6,557,23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10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66,099,150,930**
1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2,291,588,230**
		취 득 세	2,291,588,230
		-	
10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소 계**	**26,717,000**
		취 득 세	26,717,000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및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면제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③)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소 계**	**64,880,720**
		취 득 세	64,880,720
		-	
10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 계**	**7,289,275,320**
		취 득 세	7,289,275,320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10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감면(75%),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①·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0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 내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②③④)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42,201,980,260**
		취 득 세	42,201,980,260
		재 산 세	
		-	
10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2,381,985,040**
		취 득 세	2,381,639,440
		등록면허세	345,600
		재 산 세	
		-	
10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소 계**	**4,649,003,150**
		취 득 세	4,649,003,15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10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9③)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6)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110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2)	**소 계** 재 산 세 -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재 산 세 -	
112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삭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1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2②)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①)	**소 계** 취 득 세 -	**7,193,721,210** 7,193,721,210
1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①)	**소 계** 취 득 세 -	
115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의2①②)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116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과학관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국 가		합 계	19,370,681,180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소 계	17,098,088,250
		취 득 세	16,185,337,960
		등록면허세	25,593,100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887,157,190
		-	
11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2,106,909,940
		취 득 세	2,106,909,940
		-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165,207,970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165,207,970
		-	
120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2)	소 계	475,020
		지역자원시설세	475,020
		-	
121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1호, §120①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22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2, §54①7)	소 계	
		담배소비세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외 국		합 계	
12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124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소 계	
		주 민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 계	
		주 민 세	
		-	
126	**주한외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담배 및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	소 계	
		담배소비세	
		-	
127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기 타		합 계	14,339,576,910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54,900,780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54,900,78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129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지방세법 §15② 3호)	**소 계**	**6,014,526,450**
		취 득 세	6,014,526,450
		-	
13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6,947,850**
		취 득 세	6,947,850
		-	
13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1,395,127,720**
		취 득 세	1,395,127,720
		-	
13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2호, §120① 3호)	**소 계**	**6,179,231,210**
		취 득 세	6,179,031,210
		등록면허세	200,000
		-	
13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취 득 세	
		-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3호)	**소 계**	**367,969,290**
		취 득 세	240,313,640
		등록면허세	127,655,650
		자동차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5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135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1)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4·5·7호, §54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	
136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542,120** 542,120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②·③2)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788,000** 891,910 896,090
1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87② 1호)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2·3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	**317,686,880** 314,903,630 2,783,25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1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140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의3①②)	**소 계**	
		지방소득세	
		-	
141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조례) -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조례)	**소 계**	
		재 산 세	
		-	
14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조례)	**소 계**	**856,610**
		등록면허세	830,550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26,060
		-	